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라인상 타인사칭죄 신설〉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94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온라인상 타인사칭죄 신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여서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타인사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74조 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온라인상 타인사칭죄 신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 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74조 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현행	개정안
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 및 제6호의3</u>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 1. ~ 6의3. (현행과 같음) <u>6의4.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u> 7. ~ 9. (현행과 같음) ② ----- -----<u>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현행	개정안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② <u>제1항제3호</u>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u> <u>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한 자</u> 4. ~ 7.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u>--- ----- ----- -----.

다. 검토사항

- 최근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유명인을 사칭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송금을 유도하는 등 타인 사칭행위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타인 사칭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기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¹⁾.

- 그런데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정보의 사실 여부 판단이나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정보 유통의 신속성과 확장성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타인 사칭행위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사칭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모든 타인 사칭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익을 침해·위태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²⁾.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타인 사칭행위 중에는 재산상 손해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도 있으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손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도 존재함.
- 즉, 타인 사칭행위는 범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인 사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의무위반이나 법익침해와 무관한 행위까지 제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³⁾.
- 현행법상 타인 사칭에 관한 유사 처벌규정들을 보면, 타인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⁴⁾, 「공직선거법」은 성명을 사칭하여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⁵⁾.
 - 특히 대법원은 공무원사칭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합동수사반원의 지위를 사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가

2)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박영사, 2024, p.75-77.

3) 정완·안아름, ‘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의 법적책임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 19권 제2호, 2018, p.413, 416.

4)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8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단순 사칭행위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한 바 있음(대법원 1981.9.8. 선고 81도1955 판결)⁶⁾.

○ 해외 입법례들 또한 타인 사칭행위가 구체적인 법익 침해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뉴욕주법은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 편취하거나, 혹은 의사소통이 공무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타인 사칭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⁷⁾.

- 캐나다 연방법률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 ② 어떠한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얻을 목적, ③ 사칭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④ 체포·기소를 면하거나 형사사범의 진행을 방해, 왜곡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타인을 기만적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⁸⁾.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타인사칭죄 신설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처벌의

6)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7) 정완·안아름, ‘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의 법적책임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2018, p.408.

8) 이상현,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p.142-144

대상이 되는 타인 사칭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칭에 따른 2차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형법」은 공무원사칭죄 등에서 사칭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후속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므로 형법과의 균형성 및 형벌의 최후수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타인사칭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온라인상 정보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지나친 가벌성 확대 및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사칭의 목적 및 피해 양태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타인사칭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함에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